

##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13년 1월 12일 조례 제1268호  
일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34호  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1호  
(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 
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  
전부개정 2024년 11월 12일 조례 제2210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,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1. 13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생활민원(이하 민원이라 한다)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.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  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- 다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
  - 라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
  - 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  - 바.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
  - 사. 첫째 자녀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
  - 아.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
2. 1472 살피드림 처리반(이하 “1472 처리반”이라 한다)이란 민원불편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달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

##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“1472 처리반”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1472 처리반 운영)** ① 1472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.

②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1472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.

**제5조(1472 처리반 임무)** 1472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 다만,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.

1. 전기·난방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
2.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
3. 화재감지기,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
4. 가사도움 서비스(전구·전기콘센트·노후전선·문고리 보수·생활공구 대여 등) 제공
5. 약취·해충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
6.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

**제6조(위탁)** ①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, 법인,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감독)**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위탁 운영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, 「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9조(장비 및 예산의 확보)**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대장 등 관리)** 1472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, 장비대장,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보고)** ① 1472 처리반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, 주요 활동내용, 수범사례,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칙** <2024. 11. 12 조례 제2210호 전부개정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